

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2. 06. 14.

발 의 자 : 정문섭 의원 외 2인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(2011.10.15. 시행)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법률 정비대상 용어를 법제처와 국회 기준으로 순화하여 사용하고자 함. 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(안 제2조 2호)
- 나. 법률 정비대상 용어를 법제처와 국회 기준으로 순화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4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“영”이라 한다)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의회의원(이하“의원”이라한다)의 직무상 사망·장애및 상해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4조 및 같은 법시행령(이하“영”이라 한다)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의원(이하“의원”이라한다)의 직무상 사망·장애및 상해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수행하거나본회의”를 “수행하거나 본회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영 제33조의 규정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제1급 내지”를 “제1급부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치료를요”를 “치료를 요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도의원 당해연도회기수당”을 “지방의원 해당연도 회기수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도의원 당해연”을 “지방의원 해당연”으로, “다음각목”을 “다음 각목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

“의한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(이하“보상심의회)””를 “따른 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(이하“보상심의회)””로 한다.

제7조 단서 중 “당해지방자치단체”를 “해당 지방자치단체”로 한다.

제9조제3항 본문 중 “의한”을 “따라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범위안에서수당, 여비, 기타”를 “범위안에서 수당, 여비, 그 밖에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4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평창군의회</u>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한다)의 직무상 사망·장애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(이하 “보상금”이라 한다)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“직무”라 함은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<u>수행하거나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</u> 말한다.</p> <p>2. “의정활동비”란 함은 영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수당을 말한다.</p> <p>3.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34조 및 <u>같은 법시행령</u>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제35조의 규정에 따라 <u>평창군의회</u>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한다)의 <u>직무상 사망·장애및 상해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수행하거나 본회의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2. ----- <u>영 제33조의 규정에 따른</u> -----</p> <p>-----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
4. “장애”라 함은 공무원연금
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
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14
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
다.

5. “상해”라 함은 장애의 경우
를 제외한 상처 또는 질병으
로 인하여 14일 이상의 치료를
요하는 경우를 말한다.

제3조(보상금 지급대상) ①보상
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
같다.

1. ~ 3. (생략)
 4.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
입었을 때
- ② (생략)

제4조(보상금 지급기준) 보상금
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
다.

1.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
상 상해·질병으로 인한 사
망의 경우 : 도의원 당해연도
회기수당 2년분 상당액
2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

4. -----

----- 제1급부터 -----

-.

5. -----

----- 치료를
요-----.

제3조(보상금 지급대상) ①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 4. 그 밖의 -----
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4조(보상금 지급기준) -----

-.

1. -----

----- 지방의원 해
당연도 회기수당 -----
-
2. -----

경우 :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
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에 다
음각목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
곱한 금액

가. ~ 하. (생략)

3.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
우 : 치료비 전액. 다만, 제2
호 가목의 보상금 지급액을초
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

제5조(보상금의 청구) ①보상금
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
다.

1. (생략)

2.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
경우 :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
지정한 대리인

②보상금은 제1항제1호의 경우
에는 사망일부터 1년이내에, 제
2호의 경우에는는 장애나 상해가
발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제1항
각호의 청구권자가 평창군의회
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
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
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영 제1
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평

----- 지방의원 해당연-----

----- 다음 각목-----

가. ~ 하. (현행과 같음)

3. 그 밖의 -----
----- . -----

----- .

제5조(보상금의 청구) ①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----- 해당 -----

②-----

----- . -----
----- 따른

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
(이하 “보상심의회”라 한다)
에서 기간내 보상금을 청구할수
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
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에
도 청구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7조(위원의 임기) 보상심의회
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
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해지방
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
퇴직 또는 전보된 때는 의원의
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때에
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.

제9조(보상심의회회의 회의) ①.

② (생략)

③보상심의회는 제5조제3항의
규정에 의한 청구서가 접수된
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심의하
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
여야 한다. 다만, 보상금 청구
에 대한 경위 조사 등에상당한
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
의 범위안에서 심의기간을 연장
할 수 있다.

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
(이하 “보상심의회” 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위원의 임기) -----

----- . ----- 해당 지
방자치단체 -----

-----.

제9조(보상심의회회의 회의) ①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-----
----- 따라 -----

----- . -----

-----.

제11조(수당등) 보상심의회에 출
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
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
당, 여비, 기타 필요한 경비를
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수당등) -----

----- 범위안에서 수
당, 여비, 그 밖에 -----
-----.